공개

의안번호	제 2 호
보 고 연 월 일	2026. 2. 4. (제3차)

보고사항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권 대 영
제출 연월일	2026. 2. 4.

1. 보고주문

「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를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회계와 외부감사 제도는 주주가치를 보호하여 국민 자금이 생산성 높은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게 하는 핵심 인프라 중 하나로, 코스피 5천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기업의 공시와 실적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높은 회계투명성이 요구됨. 그간 정부는 회계투명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감사인, 감독 등 모든 부문에서 강도 높은 회계개혁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경기둔화 등을 틈타 회계부정 위험은 늘어나고, 외부감사의 독립·전문성이 저하되는 등 회계부정 적발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우리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재 감독체계와 제재방식 등을 전면개선하는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증선위에 보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부정을 주도한 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조치를 신설하고, 저가수임 등으로 감사시간이 지나치게 적게 투입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감사인 교체 및 감사인·회사에 대한 심사·감리에 착수하며 감사품질 관리가 미흡한 감사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다양화함. 또한, 외부감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잦은 최대주주 변경 및 소속 임직원의 횡령·배임 발생 등 지배구조 취약기업에 대한 지정감사를 확대하고, 대

형회계법인에 대한 독립적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감사품질 감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제고함. 외부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감사시간 부분적용에 대해 정상화하고,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에 대한 등록요건을 정비함. 마지막으로 감사품질 제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 위해 감사품질이 우수한 법인에 대한 지정을 확대하는 한편, 감사인 품질평가기준의 실효성을 개선함.

4. 참고사항

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

< 별지 >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 · 감사 품질 제고방안

2026. 2.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2

1)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 제재 강화 3

2)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6

3) 외부감사의 전문성 강화 12

4) 감사품질 제고 인센티브 확대 14

Ⅲ. 향후계획 17

Ⅰ. 추진배경

□ **회계**와 **외부감사 제도**는 **주주가치**를 **보호**하여 **국민 자금**이 **생산성** 높은 **자본시장**으로 **유입**되게 하는 **핵심 인프라** 중 하나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자가 기업의 공시와 실적을 믿고 투자할 수 있는 **높은 회계투명성**이 **요구**

※ 자본시장연구원은 미흡한 주주환원, 저조한 수익성·성장성 외에, 낙후된 우리 지배구조와 낮은 회계투명성을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23.12.)

☞ (**'25.7.3일,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간담회, VIP말씀**)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천포인트를 넘어갈 것** (중략)

ㅇ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상법개정 같은 제도개선, 그리고 주가 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는 것

□ 그간 정부는 **회계투명성 및 대외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감사인, 감독 등 모든 부문에서 **강도 높은 회계개혁 추진**('17년~)

※ 신외부감사법 개정('17.11월)을 통해 도입된 주요 제도

ㅇ (**기업**) 주기적 지정, 표준감사시간,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형비상장사 규율체계(상장사 수준), 감사인 선정권한 이관(회사 → 감사(위))

ㅇ (**감사인**)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 품질관리기준 및 등록요건 유지의무

ㅇ (**감독**) 분식회계 과징금, 재무제표 심사, 감사인 감리

□ 그러나, **최근 경기둔화** 등을 틈타 **회계부정 위험**은 늘어나고, 외부감사의 독립·전문성이 저하*되는 등 **회계부정 적발기능 약화** 우려

* (예) 회사가 독립성 낮은 감사인 선임, 회계법인이 고객 유치 위해 감사품질 일부 희생**

** 상장사 평균감사투입시간: ('22) 2,458 ('23) 2,431 [△1.1%] ('24) 2,359 [△3.0%] ('25) 2,348 [△0.5%]

○ 실제로, '17년 회계개혁 이후 37위까지 올라간 **IMD 회계투명성*** **순위**가 '25년에 회계개혁 이전 수준인 **60위까지 하락**

* IMD 회계분야 평가: ('17) 63위 ('19) 61 ('21) 37 ('23) 47 ('25) 60

➡ 현재 **감독체계** 및 **부실감사 제재방식** 등을 **회계·감사품질 위주**로 **전면 개선***하여 우리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 회복 필요

* 그간 「회계품질 종합개선 TF」('24년),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TF」('25년) 등을 통해 금감원, 기업, 회계업계, 협회, 학계 등과 함께 현행 제도 평가 및 개선과제 발굴

※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강화 및 자진시정 인센티브 제공방안은 '25.8월 기 발표("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Ⅱ. 추진방향

기본 방향

◇ 회계부정과 부실감사는 「**시장 퇴출**」 수준으로 엄정 제재

◇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사인에 대한 **전문성·독립성**을 제고하고,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 (전문성) 회계부정 적발능력 / (독립성) 회계부정 적발시 보고할 확률

추진 과제

분 야	세 부 과 제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 제재 강화	❶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❷ 부실감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❸ 감사품질 관리 미흡에 대한 제재 강화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❶ 지배구조 취약기업 지정감사 강화 ❷ 감사인 선정절차의 공정성 제고 ❸ 감사인 내 감사품질 감독기제 마련 ❹ 비감사용역 체결현황 관련 공시 강화 ❺ 윤리기준·독립성 감시역량 강화 ❻ 과도한 독립성 규제 합리적 개선
외부감사의 전문성 강화	❶ 표준감사시간 부분적용 정상화 ❷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 등록요건 정비 ❸ 감사반의 회계법인 전환 유도 ❹ 상장사 감사인 진입·반납절차 보완
감사품질 제고 인센티브 확대	❶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❷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개선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

1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1. 회계부정 책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 **(현행)** 증선위는 회계부정이 적발된 회사에 대해 회계부정에 책임 있는 임원의 **해임**(등기)·**면직**(미등기) **권고, 직무정지** 등 조치 부과중*

* 현재 양정기준상 고의 5단계 이상, 중과실 2단계 이상의 조치부터 부과중

○ (조치 前 미리 사임할 경우) '해임권고 상당' 통보 조치만 가능하여, 이후 **해당회사**에 임원으로 **재선임**하더라도 제한이 없음

○ (해임권고에 따라 해임된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한 조치인 만큼 **계열사** 등 **다른 회사** 임원으로 **재취업**하는데 제한이 없음

※ 다만, 금융회사의 경우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관계법령(외부감사법 포함)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임원 결격사유 해당(해임권고 5년 / 직무정지 4년)

⇒ 회계부정 범죄 책임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 필요

※ **美SEC**에서는 불공정거래, 회계부정 등 증권 관련 사기행위자에 대해 상장사의 임원으로서의 업무수행 금지 가능 → '24년 중 회계부정 관련 19명 제재

□ **(개선)** 회계부정을 주도·지시한 회사관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 취업제한 명령'** 및 상장사에 대한 해당인원 **'임원선임 금지' 신설**

○ **(대상)** 위반동기가 **'고의'**로 조치된 **임원** 및 **업무집행지시자** 등

○ **(기간)** 최장 5년 이내에서 위반규모, 감안사유*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예) (가중사유) 감사방해/불공정거래 관련성 등 (감경사유) 자진신고/협조 등

○ **(효력)** **제한 대상자**는 일정기간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며, **상장사**는 대상자 **임원 선임 불가**(현재 재임중인 경우 즉시 해임 필요)

○ **(제재)**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상장사에 임원으로 취업한 자 및 제한대상자를 임원 선임한 회사에 **1억원 이하 과태료*** 등 부과**

* 자본시장법상 조치수준과 동일 ** 일정기간 미이행시 조치 재부과를 통해 실효성 확보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임원선임 제한('24.10월 개정)

-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일정기간(5년 이내) 상장사·금융사의 임원 선임·재임을 제한하는 명령 가능
- 상장사 및 금융사는 임원 선임·재임제한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고, 현재 대상자가 임원 재임중인 경우 해당회사는 지체없이 해임해야 함
- 금융위는 이를 위반한 상장사·금융사에 대해 해임요구를 할 수 있음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개정**

2. 부실감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 **(현행)** 감사품질은 투입인원 수와 숙련도, 투입시간에 비례하나, 최근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

* 상장사 평균보수(백만원): ('22) 264 ('23) 265 [+0.5%] ('24) 259 [△2.4%] ('25) 252 [△2.4%]
평균감사투입시간: ('22) 2,458 ('23) 2,431 [△1.1%] ('24) 2,359 [△3.0%] ('25) 2,348 [△0.5%]

※ **계약유형별 감사시간 및 보수 추세**

[자산 5천억 이상 상장사 기준]	'22 → '23		'23 → '24		'24 → '25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보수	감사시간
자유선임→지정	+39%	+21%	+17%	+5%	+15%	+3%
지정→자유선임	△13%	△1%	△32%	△17%	△30%	△12%

○ **(감사인)** 경기둔화 및 회계업계 성장정체 등으로 인해 **과도한 수임경쟁**을 통해서라도 고객을 유치하려는 유인이 존재

○ **(회사*)** 감사품질과 무관하게, 보다 **낮은 감사보수**를 제시하는 감사인을 선택할 가능성 존재

* 회사 및 내부감사기구는 감사인이 제안하는 감사투입예상시간 및 감사보수, 감사품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 수준에서 감사인을 선정·선임할 의무

⇒ **과도한 저가수임경쟁***이 감사시간의 과소투입으로 이어질 경우 회계부정 적발기능이 약화되어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우려

* 감사보수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수준의 보수경쟁은 감사품질 저해로 이어질 소지

※ ('25.10.31일 회계의날 **금융위원장 기념사** 中) "**지나친 저가수임 경쟁**은 감사투입 감소로 이어져 회계투명성을 **저해**할 우려"…"충분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 회계품질을 우선해달라"

□ **(개선)** 감사시간 과소투입 등으로 감사기능이 약화된 감사인 및 해당 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감사인지정** 등 페널티 부과

○ **(감사인)**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시간**을 현저히 **과소투입***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검토 거쳐 **감사인 교체**(지정), **감사인 감리** 착수

* (예) 합리적 사유 없이 △표준감사시간(산출된 시간의 하한), △전년도 실제 감사투입시간, △수임시 정한 감사투입예정시간보다 현저히 미달한 경우

○ **(회사)** 감사시간 과소투입 등으로 **회계부정 적발가능성**이 **저해**된 것으로 판단되는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및 **재무제표 심사** 착수

☞ **(필요조치) 외부감사규정 개정**

3. 감사품질 관리 미흡에 대한 제재 강화

□ **(현행)** 감사인이 상장사를 감사하기 위해서는 감사품질 관련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금융위)한 후 이를 **유지**해야 하며, **위반시 제재**

* 인적요건(40인 이상, 대표이사 경력 등), 물적요건 및 업무방법(통합관리체계 등), 심리·보상체계 등

○ **(제재수단)** 위반시 **등록취소**(중대) 또는 **지정제외점수***(경미)만 부과 가능하여 위반수준에 맞는 **차등적 처벌**이 이루어지기가 곤란

* 지정제외점수 20점당(회사규모별로 상이) 지정회사 1개씩 배정시 지정기회 박탈

○ **(경미제재)** 제도도입 초기에는 **경미**한 위반사항(3개 미만)에 대한 **제재조치를 면제**해 왔으나, 제도가 도입된지 3년 이상 경과

○ **(비례부과)** **대규모 상장사**를 감사하는 감사인의 경우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의 **파급효과**가 큰 만큼 이에 걸맞게 관리 강화 필요

□ **(개선)**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감사인에 대한 **제재실효성** 강화

○ **(제재수단)**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수준에 적합한 제재 부과를 위해 **업무정지, 감사제한, 지정배제, 경고·주의** 등 **조치 신설**

※ 조치양정기준(안)
① 중대한 위반 다수: 당해연도 상장사 신규감사 수임 금지 및 지정 배제
② 중대한 위반 1개: 당해연도 상장사 지정 배제
③ 중대한 위반 없이 보통인 위반 1개 이상: 경고 조치
④ 경미한 위반만 있는 경우: 주의 조치

○ **(경미제재)** 제도가 정착된 점을 감안, 품질관리수준 제고를 위해 **경미한 위반사항**이 **3개 미만**인 경우도 **지정제외점수** 부과

- 다만,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및 시정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정제외점수 50% 감경**(→10점 부과)

○ **(비례부과)** **감사인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정제외점수 **부과***

* (예) 가群 1.5배, 나群 1배, 다群 및 라群 0.8배

※ **등록요건 유지 의무(특히, 통합관리체계) 위반여부 점검 관련**

○ 회계법인이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시 사용한 자료를 명세서 형태로 제공받아 확인하는 등 직접 점검범위를 최소화하여 수검자 부담을 합리적 고려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개정**

2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 피감기업 측면 〉

1. 지배구조 취약기업 지정감사 강화

□ **(현행)**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지배구조**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 지정***과 **직권 지정**** 감사 실시

* 원칙적으로 모두 지정하되, 지배구조가 우수한 경우에 한해 3년간 지정 유예
** 최근 3년 내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되는 경우, 소속 임직원의 횡령 발생시

○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지배구조가 취약**해지더라도 **직권 지정 감사를 실시하지 않음**

* (주기적 지정) 자산총액 5천억원(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 이상 대기업(소유·경영미분리)

○ 상장 여부, 기업규모 등과 무관하게, **지배구조가 취약**한 경우 **외부감사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

□ **(개선)** 외부감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장회사**에 대한 **직권 지정** 감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

○ 최대주주가 빈번하게 변경되는 경우 직권지정 감사 대상을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대형※ 비상장회사**까지 확대**

* 최대주주 변경 직권지정 현황: ('21) 171 ('22) 146 ('23) 98 ('24) 73 ('25) 78
** (상장사) 최근 3년 내 2회 이상 변경 (대형 비상장사)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변경

○ 일정규모* 이상 **횡령·배임**으로 소속 임직원에 고소·공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지정 감사 대상을 상장회사 외에 **대형※ 비상장회사**까지 확대

* [임원] 자기자본의 0.5% / [직원] 자기자본의 5%
(단,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경우 임원은 0.25%, 직원은 2.5%[코스닥은 3%])

※ 자산 5천억원 이상(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사의 주기적 지정 기준과 동일)

※ 비상장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 관련

○ '23.6월 「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에 따라 '27년 중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운영성과 분석 등 원점 재검토에 착수할 예정 → 이때 같이 검토할 계획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 개정**

2. 감사인 선정절차의 공정성 제고

□ **(현행)** 감사인을 **공정하게 선임**할 수 있도록 新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감사인 선정권한**을 **회사**(경영진)에서 **내부감사기구*로 이관**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 감사인 선정 주체
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
② 감사를 둔 경우: 감사가 선정
③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 등: 사원총회의 승인 또는 회사가 선정
(②,③ → 상장사, 대형비상장사, 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 필요)

○ **감사인 선정권자**※가 감사인 선정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외부감사법 §40)
** 경제적 이익의 5배가 5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경제적 이익의 5배 이하의 벌금

- 감사인 후보와 **일정한 관계***에 있어 감사인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통제장치**(선정과정 배제)가 **부재**

* (예) 감사위원장의 자녀가 감사인 후보인 회계법인에서 근무중인 경우 또는 감사가 감사인 후보인 회계법인에서 상당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경우

□ **(개선)** 감사인 선정권자에 대해 **감사인 선정과정**에서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과태료*** 등 **제재** 부과

*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 제척·기피·회피 사유 예시 (관련 입법례 참고하여 규정화 예정)
① 최근 3년 내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감사인후보(네트워크 회계법인 포함)의 임직원인 경우
② 최근 3년 내 감사인후보로부터 일정금액(예, 500만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경우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 감사인 측면 〉

3. 감사인 내 감사품질 감독기제 마련

□ **(현행)** 상장사 감사인은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표이사** 등에 대한 **효과적 견제체계**를 갖출 필요(등록요건)

○ (**Big4 회계법인**) **경영위원회** 등 **집행기구** 및 **견제기구***도 **별도**로 운영하는 등 외형상 지배구조는 정비

* 집행기구를 거쳐 사원총회에 부의하는 중요 안건 사전심의 등 경영진 견제기능

- 법인에 따라 감사품질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내부위원회를 자율적으로 두는 경우가 있으나, **외부전문가 참여 없이** 내부인원으로 운영

○ (**Big4 이외 회계법인**) 운영위원회 등 집행기구가 집행권한을 위임받아 주요 사항을 결정하지만, 대부분 **별도 견제기구**는 **없음**

○ 그러나, 주요 의사결정이 감사품질 위주로 이루어지는지 **외부확인**이 어렵고*, 폐쇄적 지배구조로 인해 **공익기능**이 **간과****될 우려

* 현재 지배구조 현황만 공시 → 지배구조의 실질적인 운영성과 확인·평가 곤란
** 독립적인 외부인의 참여가 없는 경우 법인이나 경영진의 이익에 매몰될 소지

※ 英, 日 등도 회계법인 지배구조 원칙을 마련,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를 지배구조에 포함하고 운영성과 등을 공시하게 하며, IFIAR(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 등도 관련 논의 진행 중

□ **(개선)** 감사인 내에 **감사품질 중심 의사결정**을 감시·유도할 수 있는 **외부감독기제를 의무화**하고, 관련 **공시**도 **충실**하게 하도록 보강

○ **(외부감시)** 대규모 상장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예, 가群※)에 대해 (가칭)"**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 운영 추이를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상장사 등록 감사인 전체로 확대 검토

- (**구성**)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과반**을 "**독립적인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외부전문가가 맡도록 규정

* 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수준의 독립성, 전문성 요건 규정

- (**기능**) **사원총회 부의 주요안건 중 감사품질 관련 사안** 등에 대한 **사전심의** 등 객관적 시각에서 **외부검증·감독 활동 수행**

○ **(공시 확대)**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지배구조 운영현황**을 시장참여자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시항목 확대***

* 지배구조 구성원, 선출방법, 회의참석 여부, 중요의결 내용, 지배구조 KPI,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구성 및 활동내역 등 지배기구 운영실적 공개

☞ **(필요조치) 외부감사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4. 비감사용역 체결현황 관련 공시 강화

□ **(현행)** 정보이용자에게 감사인과의 독립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현황 기재*** **의무화**

* ①감사인의 명칭 및 감사의견, ②감사용역 체결현황, ③감사인과 비감사용역 계약 체결현황, ④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 간 논의결과 등

※ 안전장치 마련(예, 내부감사기구와의 협의 및 동의 등 내부통제절차)을 통해 독립성 훼손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경우 감사인도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수행 가능

○ **비감사용역 수임제한 대상**이 감사인과 관계된 **'네트워크 회계법인*'**(별도 컨설팅법인 등)까지 **확대**(공인회계사 윤리기준 개정, '25.1월)

* 감사인과 협력이나 이익공유(비용분담) 목적으로 하거나, 소유·통제·경영, 품질관리, 사업전략, 브랜드명칭, 전문자원 상당부분을 공유하는 대규모 조직 (예,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과 딜로이트컨설팅법인)

○ 최근 감사인과 관계된 네트워크 회계법인을 통해 비감사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관련 **독립성 훼손위험**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

□ **(개선)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네트워크 회계법인' 현황** 공시 의무화

○ **[기업]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에 감사인 외에, 감사인과 관계된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현황**까지 포함(기조치)

☞ **(필요조치) 기업공시서식 개정 및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5. 윤리기준 · 독립성 감시역량 강화

□ **(현행)**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위해 감사인과 피감회사 간 **독립성**이 준수되어야 하며, **한공회**는 윤리기준 제개정 및 독립성 준수 여부 **감시**

○ 또한,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 배정통지 후 **독립성 이슈**에 대해 **약 2주 내**에 검토를 마쳐야 함(필요시 한공회에 문의)

○ 그러나, 한공회에는 독립성(윤리기준) 관련 **전담인력 없이 2명**이 감사기준 연구 등과 **겸직**하여 업무수행하는 등 **충분한 인력 부재**

□ **(개선)** 감사인과 피감회사의 윤리기준 및 독립성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윤리기준센터**」 설치·운영(한공회 내)

* 독립성 이슈 및 윤리기준 제개정 검토 등 담당할 전담인력 확보(예, 2~3명)

☞ **(필요조치) 공인회계사회 내규 개정 등**

6. 과도한 독립성 규제의 합리적 개선

*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일정부분 대체(trade-off) 관계여서 과도한 독립성 규제는 오히려 전문성을 저해할 가능성 → 감사품질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합리적 개선

가. 의무교체

□ **(현행)** 독립성 확보를 위해 **상장사**를 감사하는 **감사인, 담당이사, 감사업무보조자**(일부)를 일정주기마다 **교체**해야 함

* (감사인) 상장사가 6년간 감사인 자유선임 후, 정부가 3년간 감사인 지정
(담당이사) 담당이사가 해당 상장사를 3년간 감사한 후에는 이후 3년간 감사 제한
(감사업무보조자) 해당 상장사를 3년간 감사 참여한 회계사 중 2/3 이상 교체

○ 감사인 및 담당이사를 교체함에도, **실무자**인 감사업무보조자까지 교체하는 것은 오히려 외부감사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측면

* 해외에도 업무수행이사, 품질관리 담당이사 교체제도는 있으나, 감사업무보조자 교체제도는 찾기 어려움

□ **(개선)** **감사업무보조자 2β 의무교체 폐지**

나. 근무관계 관련 직무제한

□ **(현행)**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가 감사대상회사의 **임직원**(과거 1년 이내 포함)이면 안됨

* 배우자의 경우 직원은 재무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

※ 회계법인의 경우 비록 감사대상회사 감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원*** **전원**(그 배우자 포함)이 해당 회사에 同 독립성 준수 필요

* 사원이 아닌 공인회계사의 경우 감사 참여자(그 배우자 포함)만 독립성 준수 대상

□ **(개선)** 해당회사 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 **관련 임원**'(1년 이내 포함)인 경우에 한해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 제한

* 재무제표 작성,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내부감사, 자금 관리 등의 업무

※ 감사 非 참여 사원의 배우자가 **非 재무 임원**이거나, **직원**인 경우는 감사 **허용**

< 근무관계 관련 회계법인 사원에 대한 직무제한 개선 >

구분	감사 참여	현행		개선		변화
		임원	직원	임원	직원	
사원 본인	O	제한	제한	제한	제한	동일
	X	제한	제한	제한	제한	
사원의 배우자	O	제한	제한(재무)	제한	제한(재무)	
	X	**제한**	**제한(재무)**	**제한(재무)**	**가능**	**합리화**

다. 주식소유 및 채권·채무 관계 관련 직무제한

□ **(현행)**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회사*와 **주식소유**, 특정 **채권·채무 관계**가 있으면 안됨(배우자 포함)

*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당해 지배회사에 한정하고, 종속회사는 제외됨

※ 회계법인의 경우 비록 감사대상회사 감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원*** **전원**(그 배우자 포함)이 해당 회사에 同 독립성 준수 필요

① **(주식소유)** 감사참여 회계사, 법인 소속 사원 전체 및 그 배우자는 회계법인의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주식을 **1주도** 보유해서는 안됨

※ 합병·상속·소송 등 비자발적 취득시 지체없이 처분한 경우 직무제한 미적용

- **우리사주 배정**, 경품추첨* 등의 **비자발적 취득** 해당 여부나 **간접투자**(공모펀드 등) 금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실무상 혼선** 초래

* (예) 임의의 주식을 지급하는 이벤트에 당첨되었으나, 감사대상회사 주식인 경우

② **(채권·채무)** **예적금·대출**의 경우 감사기간 중 **신규거래**가 제한되고, **신용대출**의 **만기연장**도 금지(담보대출만 연장 가능)

- 감사참여자를 제외한 사원 및 배우자 전원의 **과도한 불편*** 초래

* (예) 주거래금융기관 변경, (신용)대출 중도상환

□ **(개선)** 주식 간접투자, 소액 보유, 표준화된 거래에 대해 규제 **합리화**

① **(주식소유)**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감사참여 무관, 배우자 포함)의 **간접투자***(공모펀드 등)를 명확히 허용

* 펀드 운용방식을 직접 지시할 수 없어야 하고, 투자대상이 분산화되어야 함

- **우리사주 배정, 경품추첨** 등에 따른 주식취득*은 **'비자발적 취득'**으로 보아 지체없이** 처분한 경우 **직무제한 미적용**

* 현금정산 선택권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처분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실무적용

② **(채권·채무)** 금융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감사 참여 무관, 배우자 포함)에 대한 해당 금융회사와의 **약관상 금융거래**※** 허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조건보다 유리하게 체결한 경우 적용 제외(현행 동일)

※ **예적금**[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現 1억원) 이내]·**보험 가입·갱신·연장, 신용대출 만기연장**(표준약관 限) 등 (대출 신규가입은 현행대로 계속 제한)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및 시행령 개정 등**

3 외부감사의 전문성 강화

1. 표준감사시간 부분적용 정상화

□ **(현행)** 감사품질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표준감사시간*** 도입('19년~)

* 외부감사인이 투입해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회사규모별로 정한 기준

○ 회사부담 등을 고려, **규모順**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일정비율만 적용하는 **부분적용* 조치 연장**이 관행적으로 반복**

* 산출된 표준감사시간의 70%~95% **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계속 연장**

○ 자산 5천억 이상 회사도 그 이하와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대기업***인 **비상장회사**에 걸맞는 **감사시간**이 적용되지 못하는 문제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자산 5천억원 미만인 비상장회사를 제외
※ 대기업인 비상장회사는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 규율체계를 적용받도록 설계

□ **(개선)** **상장사·대기업인 비상장회사**에 대한 표준감사시간 적용 **정상화**

○ **(자산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상장사)** '26년부터 **100%** 적용

○ **(자산 1천억 미만 상장사, 자산 5천억 이상 비상장사)** '27년부터 상향

※ **자산 5천억원 미만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부분적용 연장**(200억 미만은 유예 연장)

		'19년	'20년	'21~'25년	**'26~'27년**
상장사	자산 2조원 이상	100% 적용	좌동	좌동	좌동
	자산 1천억~2조원	**85% 적용**	**90% 적용**	**95% 적용**	**100% 적용('26년~)**
	자산 1천억 미만	**80% 적용**	**85% 적용**	**90% 적용**	**95~100% 적용('27년~)**
비상장사	**자산 5천억 이상**	**70% 적용**	**80% 적용**	**90% 적용**	**95~100% 적용('27년~)**
	자산 1천억~5천억	70% 적용	80% 적용	90% 적용	부분적용 연장
	자산 2백억~1천억	유예	70% 적용	70~80% 적용	부분적용 연장
	자산 2백억 미만	유예	유예	유예	유예 연장

☞ **(필요조치)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한공회 내 설치) ※ **기조치('25.12월)**

2.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 등록요건 정비

□ **(현행)** 현재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경력 10년 이상**을 필요로 함

○ 그러나, **회계처리 자문 등의 경력**만으로 대표이사가 되는 것은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 **(개선)**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 요건에 회계처리 경력을 인정하더라도 **최소한의 외부감사 경력**(예, 7년)은 필요하도록 개선*

* (예) 총 경력이 회계처리 또는 외부감사 10년 이상(단, 외부감사 경력 7년 이상)

☞ **(필요조치) 외부감사규정 개정**

3. 감사반의 회계법인 전환 유도

□ **(현행) 감사반**은 감사업무를 위해 **각자의 개인사무소**를 가진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모여 한공회에 등록한 **감사인**의 형태

○ 품질관리실 및 전담업무자, 준법감시인 등의 **품질관리(조직)**를 요구하는 **회계법인**과 달리, **감사반**은 **구성원 간 상호심리**만 수행

○ 외부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감사반**의 **회계법인 전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회계법인 **분사무소 설치요건이 제약***

* 분사무소는 한곳에 공인회계사 3명 이상 상근이 필요하나, 감사반 소속 공인회계사는 대부분 각자 개인사무소를 두고, 감사업무만 형식적으로 공동 수행

□ **(개선) 분사무소 설치요건**(상근인원) **공인회계사 3인 이상 → 1인 이상**

○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3인 미만 분사무소**에 대한 감사 수행요건* 강화 및 **상장사 감사인 소속 분사무소** 감사업무에 대한 **자체심리** 의무화

* 감사시 주사무소와 함께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가 감사를 수행하도록 의무화

☞ **(필요조치)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4. 상장사 감사인 진입 · 반납 절차 보완

□ **(현행)** 상장사 감사인의 **분할신설법인은** 그간 감사경력에도 불구, **다시 새롭게 실적**을 쌓아야* 상장사 감사인으로 **진입(등록) 가능**

* 등록요건 심사시 단순 마련 외에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해야 해 일정기간 실적 필요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계획(계약)서에 따라 권리·의무가 승계되므로 상장사 감사인이 이를 **악용**해 旣부과된 **제재조치**를 **무력화***할 우려

* (예) 감사담당인력은 모두 신설법인으로 옮기고, 제재조치는 분할승계법인에 잔존

○ 상장사 감사인 **등록 자진반납 절차가 없어**, 감사품질 제고 여력이 없는 감사인이 억지로 감사를 하다가 **부실감사**를 할 가능성

* 등록취소를 통해 시장 이탈시 향후 결격사유(예, 자본시장법상 금투업자 대주주) 해당 소지

□ **(개선)** 상장사 감사인 **진입·반납 절차를 합리적으로 보완**

○ **(진입)** 기존 상장사 감사인이 **분할(합병)**을 통해 **분할신설법인** 설립시 **旣제재조치 승계법인 지정 근거 신설** 및 등록 심사절차 합리화

○ **(반납)** 상장사 등록 감사인 **등록 자진반납절차 신설**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4 감사품질 제고 인센티브 확대

1.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 (기본방향) 인력·규모 위주에서 감사품질 중심으로 감사인 지정방식을 개편하여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 촉진

가. 감사인 群 분류체계

□ **(현행) 감사투입여력, 품질수준, 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한 **감사인群을 분류**하여 群마다 지정가능 회사(자산규모별)를 **차등화**

○ 감사품질이 우수해도 큰 규모의 회사를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등 **現 군 분류체계**가 **지나친 칸막이로 작용**한다는 지적

* 현재 나군 회계법인은 감사품질이 우수해도, 2조 이상 회사를 지정받을 수 없음

○ 아울러, **자본시장 성장, 최근 소송가액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능력 규모**를 **인상**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

군	법인	소속 회계사 수	품관인원기준* 대비 규모	손해배상 능력	자산규모별 지정 가능회사			
					0	1천억	5천억	2조
가	4	500인↑	140%↑	1,000억원↑				
나	14	100인↑	140%↑	100억원↑				
다	21	40인↑	120%↑	10억원↑				
라	0	그 밖의 회계법인						

* 소속 회계사수 기준: (40~70명) 1명, (~100명) 2명, (~300명) 2명 + 100명 초과인원의 2%, (301명~) 6명 + 300명 초과인원의 1%

□ **(개선) 손해배상능력** 기준은 군 관계없이 **일괄 2배 상향***하고, **감사품질 우수법인**에게 배정대상을 확대하는 **군 상향 특례** 신설

* (가군) 1천억원 → 2천억원 (나군) 100억원 → 200억원 (다군) 10억원 → 20억원

○ **(나→특례가)** 나군 중 품질우수 법인*을 특례가군으로 지정하여, **자산 2~5조원 회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

* (품질평가) 가군 평균점수 95% 이상 & 나군 중 상위 20% 이내 (손배능력) 나군 기준의 150%

○ **(다→특례나)** 다군 중 품질우수 법인*을 특례나군으로 지정하여, **자산 5천억~2조원 회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허용

* (품질평가) 나군 평균점수 95% 이상 & 다군 중 상위 20% 이내 (손배능력) 다군 기준의 150%

나. 감사인 점수

□ **(현행)** **인원수**(숙련도 고려), **감사매출 비중, 품질수준** 등을 고려, 감사인별로 **감사인 지정시 사용**되는 **감사인점수** 산정(1년간 사용)

감사인 점수	=	소속 회계사 인원수[1]	×	차감: 회계감사 外 매출 비중[2]	×	△감점: 품질관리 감리 지적사항[3]	×	+가점: 품질관리수준 우수 평가[4]

1) 경력별 가중치: (수습) 40, (~2년) 80, (2년~) 100, (6년~) 105, (10년~) 110, (15년~) 115, (20년~) 120, (30년~) 110, (40년~) 100
2) 회계감사 매출비중에 따른 차감율: (40~50%) 3%, (30~40%) 6%, (20~30%) 9%, (10~20%) 12%, (~10%) 15%
3) 미이행 권고사항 개수별 차감율(30% 한도): (미구축 또는 미운영) 2%, (일부 미구축 또는 일부 미운영) 1%
4) 계량지표 평가결과 가산율: (상위 15% & 85점 이상) 10%, (상위 15% & 85점 미만) 5%, (상위 30% & 80점 이상) 5%

○ **(품질평가)** 품질 평가결과 **가점**(최대 10%)을 받는 **우수법인 6개사**(15%)를 제외하면 평가에 따른 영향이 없어 **품질제고 유인 미흡**

* 군별 역량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가점을 받는 6개사 중 4개사는 '가'군

○ **(감사매출)** 소속회계사 중 非회계감사 부문 인원을 **과소차감***하고 있어 **지정감사 투입역량**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 (예) 회계감사 外의 매출비중이 50%에 달하는데도, 소속회계사수 중 3%만 차감

○ **(수습회계사)** 소속회계사수 산정시 **수습 회계사 경력별 가중치**가 **전문성, 업무기여도** 대비 지나치게 낮아* 비합리적인 측면

* 전문자격시험을 통과하였으나 실무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 1년차 회계사의 50%만 인정

□ **(개선)** '인원·규모'에서 '**감사품질**' 중심으로 감사인점수 **산정 방식**을 **개편**하고, **지정감사 투입역량** 및 **전문성 측면**을 합리적으로 **보완**

○ **(품질평가)** **감점**을 **신설**(0% → △10%)하고, **군별**로 **상대평가***하는 등 감사품질에 따른 **차이**를 **합리적**으로 **확대**(예, 10%p → 20%p)

* (예) 가군 4개사는 +10%/+5%/0%/△5%를 각 1개사씩 부여(하위군 평균 미달시 △10%p 부여)

○ **(감사매출)** 소속회계사에 대한 **회계감사'外' 매출 차감 방식 변경**

- 과도한 경우 **일부만**을 차감 → 회계감사'外' **매출 비중***만큼 **차감**

* 컨설팅 사업본부(회계사 거의 없음)를 같이 운영하는 회계법인의 경우 해당부문 차감 불합리 → (예) 감사본부 기준으로 '소속회계사수' 및 '감사外매출 비중'을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 검토

○ **(수습회계사)** 소속회계사數 산정시 **수습회계사 경력별 가중치**를 전문성, 업무기여도 등에 비례하여 **현실화***(예, 40 → 70)

* 수습회계사數 반영 상한도 상향 조정(등록회계사 수의 30% → 40%) ※ 빅4 평균 32%

※ **감사인 배정** 과정에서도 감사인 간 점수 差가 지정회사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도록 배정방식을 **개선**하여 **감사품질 제고** 유도

☞ **(필요조치) 외부감사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개정**

2.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개선

□ **(현행)** 新외부감사법 개정('17.11월)으로 **감사인 품질관리기준***이 법제화되고,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제**가 **도입**('22년~)

* 감사업무의 품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 **(평가요소)** 감사품질의 핵심 요소는 '충분한 감사시간 투입'인데, 품질관리수준 **평가**에 감사투입시간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

○ **(평가실효성)** 독립성, 품질관리 등 감사품질에 핵심적 요소들에 대해, **우수평가가 지나치게 용이**한 경우 존재(예, 대다수가 만점)

○ **(평가단위)** 감사인별로 품질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회사를 배정하는데, 감사인 내에서는 **합리적 기준 없이 감사팀**을 **편성**하는 경우 존재

○ **(평가대상)** 외부감사 서비스 '**고객**'인 **기업**이나 **감사위원회**의 평가가 배제되어 제공자 관점의 **일방적 평가**에 머무른다는 의견

< 계량평가 기준 지표* 및 세부 평가항목 >

구분	지 표	배점(65점)	세부 평가항목
역량	(1) 리더십 책임	6	품질관리 전담인력 비중 및 업무부담
	(2) 윤리적 요구사항	7	독립성 담당인력 비중, 독립성 및 윤리기준 위반
	(3) 의뢰인 관계, 업무수임	4	위험평가 사전검토 비율, 회계감사업무 매출비중
	(4) 인적자원	7	교육훈련, 감사인력 유지율, 업무부담
	(5) 업무수행	12	입증감사 전 투입시간, 사전심리시간, 전문가활용 등
	(6) 모니터링	4	사후심리시간, 사후심리 비율
상태	(7) 감리결과 등	19	심사·감리 결과, 감사인 감리 결과, 재무제표 재작성 빈도
동태	(8) 감사품질 개선정도	6	개선권고 이행 여부, 품질관리수준 평가 개선정도

* 계량지표(65점)는 감사인 전체가 매년 평가 / 비계량지표(35점)는 3~5년 주기로 금감원이 현장 평가

□ **(개선)** 품질평가제도 도입 **3년간 운영결과, 피감사인**(기업계) **의견, 국내외 연구** 등을 반영하여 평가지표의 실효성 제고

○ **(평가요소)** **감사수임**상기 (3) 및 **감사업무 수행**(5) 단계에서 표준감사시간 대비 **적정 감사시간**이 투입되었는지를 평가요소에 포함

○ **(평가실효성)** 기존 평가지표 중 **독립성 위반**(2)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충실성(1)에 대한 평가실효성 보완

○ **(평가단위)** 감사품질에 기반하여 감사인 내 **지정감사팀 배정기준**을 마련·운영하는지 여부를 평가요소에 새롭게 포함

○ **(평가대상)** **수요자**(기업·감사위) **관점**에서의 평가결과*를 신규 반영

* (예) △감사팀의 산업전문성 및 구성원의 연속성, △내부감사기구·회사와 충분한 소통 등

☞ **(필요조치)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Ⅲ. 향후계획

□ **'26년중 시행**(법률은 국회제출)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 추진

○ 전문가·회계업계·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법규 개정안 마련**

○ **법개정사항**은 **'26년 상반기** 중 **국회제출**(의원입법 추진)

○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26년 상반기 중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 실시

세부 과제	소관법규
1. 회계부정 및 부실감사 제재 강화	
1 회계부정 책임자 상장사 취업제한	외부감사법
2 부실감사 엄정 제재	외감규정
3 감사품질 관리 미흡에 대한 제재실효성 강화	외부감사법
2.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1 지배구조 취약기업 지정감사 강화	외부감사법·령
2 감사인 선정절차의 공정성 제고	외부감사법·령
3 감사품질 위주로 감사인 지배구조 개선	외감규정
4 비감사용역 체결현황 관련 공시 보완	기업공시서식* / 외감규정세칙
5 윤리기준·독립성 감시기능 제고	한공회 내규
6 과도한 독립성 규제 합리적 개선	외감법, 공인회계사법·령
3. 외부감사의 전문성 제고	
1 표준감사시간제 부분적용 정상화	표준감사시간위 의결*
2 상장사 감사인 대표이사 등록요건 합리화	외감규정
3 감사반의 회계법인 전환 유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4 상장사 감사인 진입·반납절차 보완	외감법 및 외감규정
4. 감사품질 제고 인센티브 확대	
1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외감규정
2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기준 개선	외감규정(시행세칙)

* '25.12월 기 조치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회계제도팀	회계감독국 회계감리1국 감사인감리국
연 락 처	02-2100-2693	02-3145-7762 02-3145-7703 02-3145-7866